

복지이슈 FOCUS

현장공감 경기복지재단

기본소득
특별호 3

2020. 8

기본소득과 복지정책의 관계

연일 언론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논쟁하고 있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정책대안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기본소득이 소개된 바 있지만 체계적인 내용 이해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복지업무를 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복지이슈 FOCUS 특별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3주 간격으로 발간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발간일정 〉

- 1호(7.13).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들(이지은,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 2호(7.30). 기본소득의 다양한 자원들과 의미(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
- 3호(8.20). 기본소득과 복지정책의 관계(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
- 4호(9.10). 기본소득과 빈곤층(백승호, 가톨릭대학교 교수)
- 5호(9.28). 기본소득과 노인(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 6호(9.28). 기본소득과 장애인(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경기복지재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집필**

강남훈 | 한신대학교 교수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nkang@hs.ac.kr)

- 복지이슈 FOCUS는 빠른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요현안 및 이슈를 발굴하기 위하여 복지 이슈를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37

Fax: 031-898-5935

-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한 배당으로서 복지국가의 한 구성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사회보장을 대립시키는 프레임은 적절하지 않음
-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정책과의 관계
 - 기본소득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와 병행되어야 하지만, 실업이나 저소득을 조건으로 하는 선별적 소득보장 정책과는 대체 관계로 볼 수 있음
 - 선별적 소득보장정책과 기본소득의 관계가 논의되는 것은 선별적 소득보장정책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 선별적 소득보장정책의 문제는 ①소득 순위 역전, 소득 격차의 급격한 축소 ②노동유인 감소 ③사중손실 ④경제적 효율성 문제 ⑤정치적으로 증세 합의가 어려움 ⑥장기적으로 재분배의 역설로서 저소득층에게 집중할수록 저소득층이 받는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선별적 소득보장정책과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복지 효과, 경제 효과, 재분배 효과와 관련된 논쟁 역시 이뤄지고 있음
- 기본소득이 도입된다고 할 때 상상해볼 수 있는 사회보장의 구상
 -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 월 10만원을 제공하는 모형으로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유지 강화, 사회수당과 공공부조는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되 기본소득을 초과하는 액수를 지원함으로써 급여수준을 보장하는 방식
 -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 : 월 50만원 제공 모형으로 사회서비스와 사회보험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국민연금의 값 조정, 사회수당, 공공부조는 기본소득으로 전환되는 모형
- 2019년 경기도 도민 공론조사 결과 월 30만원을 받는 기본소득에 72%가 찬성하였음.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올바른 정보에 기초한 열린 토론임

I 들어가며

■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본소득 논쟁이 격화되고 있고,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된 주장들이 제기되었음

-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가치, 정의와 관련된 토론들이 진행되고 있음
 - 강남훈과 양재진의 대담 과정에서 기본소득보다 복지국가가 더 좋다는 주장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 바가 있음¹
 -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더 정의롭다는 주장도 이뤄지고 있음²
-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에 비해서 복지 효과, 경제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음
 - 동일한 예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주면, 가난한 사람들 빈곤 탈출 효과가 크고, 소비성향이 높아서 복지효과와 경제 효과가 크다는 주장임³

■ 이러한 질문에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 기본소득과 복지제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아래에서는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을 대립시키는 프레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선별적 복지정책이 기본소득과 대체관계로 논의되는 이유를 살펴봄
- 마지막에는 기본소득과 복지제도를 결합시키는 두 가지 방식(높은 수준의 기본소득,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살펴보고,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된 도민 토론결과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의 가능성을 살펴봄

1 강남훈, 양재진 대담, 한국일보, "기본소득 도입해야 할까", 2020. 6. 18

2 동아일보, "전 국민 고용보험,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정의로워", 2020. 6. 7.

3 이상이, "가짜 기본소득 담론은 모두 배척해야 한다", 프레시안, 2020. 8. 3

II 과일인가 사과인가-복지국가와 기본소득

■ 기본소득의 본질

- 기본소득의 본질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관 제2조(목적)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정관에 의하면, “기본소득이라 함은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개정 2019. 1. 26.]
- 기본소득 정의의 여러 가지 측면 중 기본소득의 본질은 공유부 배당에 있음
 - 공유부라는 것은 토지, 환경, 지식, 데이터, 화폐 발행권 등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여해서 만든 것, 사회적 협약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 등임
 - 주권자들은 공유부의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공유부의 공동소유자에게 공유부로부터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균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음
- 기본소득의 특징은 보편성(모두에게),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이며, 기본소득의 효과는 실질적이고 평등한 자유와 참여를 보장하는 것임

■ 복지국가의 본질

- 복지국가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민의 복지와 행복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가’를 의미
-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사회보장정책은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회서비스: 공공의료, 공교육, 노인 돌봄, 장애인 서비스
 -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공공부조: 장애인수당, 기초생활보장, 실업부조
 - 사회수당: 아동수당, 기초연금

- 각 사업의 내용은 사회보장법 제3조(정의)에 대략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은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를 통칭하는 것임
 -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 기본소득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와는 병행해야 할 제도임
 -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서울 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의하면, “기본소득은 다른 사회서비스와 결합되어 제공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층, 취약 계층 또는 중위소득·저소득층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사회서비스나 수당을 대체하는 것에 반대함”(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서울 총회 결의, 2016)
- 기본소득은 사회수당을 전체 인구로 확대한 것과 같음
 -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기본소득보다 낮은 금액의 아동수당, 기초연금, 보편적인 청년수당 등은 기본소득으로 흡수될 수 있음

■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와 관련해 올바른 질문과 올바르지 못한 질문

○ 기본소득 vs 복지국가

-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서울 총회에서 결의했듯이,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구성 요소 중하나임
- 따라서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사과인가 과일인가와 같이 잘못된 질문으로 볼 수 있음

○ 기본소득 vs 전 국민 고용보험

-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이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에 속하는 제도임. 기본소득과 사회보험은 병행되어야 하는 제도라는 점에 전 국민 고용보험은 기본소득은 병행하는 제도임
- 결과적으로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 하는 질문은 과일이 좋을까 채소가 좋을까라는 질문과 같음. 그리고 둘 다 먹어야 한다고 대답해야 함

○ 기본소득의 효과성 vs 사회보장의 효과성

-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사회수당을 통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효과적인지, 사회보장이 효과적인지 질문하는 것은 사과보다 과일이 효과적이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가 좋을까, 기본소득 도입이 좋을까 혹은 보편적 실업부조 도입이 좋을까, 기본소득 도입이 좋을까 등과 같이 개별제도를 중심에 놓고 질문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기본소득은 실업이나 저소득을 조건으로 하는 선별적 소득보장 제도와 일부 대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임

▣ 선별적 소득보장과 기본소득

■ 선별적 소득보장정책과 기본소득은 대체관계인가

- 기본소득과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는 병행해야 하는 반면, 기본소득은 일부 공공부조 제도, 특히 저소득이나 실업을 조건으로 하는 선별적 소득보장제도와 대체관계로 볼 수 있음
 - 기본소득 급여가 보편적인 실업부조 제도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등의 선별적 소득보장제도보다 높을 경우 기본소득 제도로 대체될 수도 있음
- 선별적 소득보장정책과 기본소득을 대체관계로 보는 이유는 선별적 소득보장정책의 여러 가지 한계 때문임

■ 소득분포 현황

- 국세청이 유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소득격차는 심각한 수준임
 - 아래표는 개인소득을 한줄로 나열했을 때 분위별 소득임
 - 개인소득자 2,779만명=2,325만명(연말정산 신고자 + 종합소득 신고자)+454만명(일용직 소득자)
 - 2018년 기준으로 50% 분위의 소득은 불과 2,065만원에 불과한 반면, 99% 분위의 소득이 1억 5,404만원으로 나타남
 - 특히, 최고 분위(99.9%~100%)의 소득은 14억 7,132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득분위 99.0%와 99.9% 분위 소득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남
 - 소득자들 사이에 시장소득의 지니계수⁵는 0.5515

4 핀란드 같이 실업자에게 월 80만원 정도를 65세까지 지급하는 제도

5 소득 분포의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한 계수로써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을 향한 사람 수의 누적 백분율을 가로축으로 하고, 그 사람들의 소득 누적 백분율을 세로축으로 잡았을 때 그려지는 대각선을 현(弦)으로 하는 활 모양의 곡선인 로렌츠 곡선과 대각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대각선 아래쪽의 직각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이른다. 이것이 0에 가까우면 소득 분포가 평등하다고 판단한다.

〈표 1〉 2018년 개인 총소득의 분포 (만명, 백만원)

소득분위	소득	소득분위	소득	소득분위	소득	소득분위	소득	소득분위	소득
0.0%	0	9.0%	1.7	80.0%	47.48	98.0%	125.21	99.8%	370.43
1.0%	0.06	10.0%	2.1	90.0%	69.86	99.0%	154.04	99.9%	496.64
2.0%	0.22	11.0%	2.34	91.0%	72.75	99.1%	154.04	100.0%	1471.32
3.0%	0.31	20.0%	4.88	92.0%	75.92	99.2%	184.56		
4.0%	0.42	30.0%	9.7	93.0%	79.44	99.3%	194.2		
5.0%	0.95	35.0%	12.45	94.0%	83.31	99.4%	206.15		
6.0%	1.01	50.0%	20.65	95.0%	93.08	99.5%	241.22		
7.0%	1.33	60.0%	26.71	96.0%	100.42	99.6%	268.19		
8.0%	1.59	70.0%	35.15	97.0%	110.33	99.7%	306.81		

■ 선별적 소득보장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

【선별적 소득보장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 설명을 위한 가정】

개인 소득의 분포가 위와 같은 나라에서 실업자에게 매월 100만원씩 1년에 1,200만원을 실업부조로 주는 경우를 가정해봄(위에서 인용한 동아일보에 나온 주장 참고)

○ 소득 역전

- 〈표 1〉의 세부자료에 의하면 34%분위의 연 소득이 1,137만원이고, 35%분위의 연 소득이 1,245만원임. 실업자에게 매월 100만원씩 지급할 경우 실업자의 가처분소득(시장소득 + 보조금 - 세금)은 34% 분위까지의 소득자보다 많아짐
- 소득 역전자 수가 약 971만명에 달함

○ 노동 유인 감소

- 소득 역전을 경험했거나 열심히 일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경제적 활동을 제도에 맞추어 변화시킬 여지가 있음
- 소득 역전자들이 생각하기에 소득활동을 중단해 실업부조를 받게 되면 연간 1,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활동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음

○ 사중손실

- 사중손실이란 정책에 의해서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은 효율성의 감소를 의미함. 경제적 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실제로 지급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소득활동 중단으로 인한 사중손실까지 고려해야 함
- 34% 분위까지의 소득 역전자들이 소득활동을 중단하면 이들이 벌었던 국민소득 46조 원이 사라지게 되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함

○ 효과성

- 선별적 소득 보장은 지급 금액이 클수록 소득 역전, 노동유인 감소, 사중손실이 커짐
- 사중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급 금액을 줄이면 복지 효과, 경제 효과, 재분배 효과도 작아짐

○ 증세 가능성

- 일정 예산이 있다고 할 때, 실업자에게만 급여를 많이 줄 수 있지만, 전 국민에게 주면 조금밖에 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함. 그러나 예산은 유권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 과정이 정치라 할 수 있음
- 선별적 소득 보장은 선별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순부담자로 만들. 따라서 순부담자가 되는 인구의 대부분이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음

■ 기본소득과 선별적 소득 보장의 비교

○ 기본소득의 효과

- <표 2>는 <표 1>과 같은 소득자 2,779만명으로 구성된 경제 모델에서 소득의 10%를 기여금으로 걷어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의 효과를 보여준 것임
- 표에서 <시장소득 2>는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시장소득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기본소득은 소득활동을 중단할 이유가 없으므로 시장소득 2와 시장소득이 같음. 즉 사중손실이 없음
- 소득의 10%를 기여금으로 걷으면 87조원이며, 이것을 전국민에게 나누면 1인당 연 313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됨
- 이때 14% 분위의 사람은 기본소득으로 313만원 받고 기본소득을 위한 기여금으로 28만원을 낼 경우 285만원의 이익을 얻게 되어 가처분소득은 564만원이 됨

- 66% 분위의 사람은 기본소득으로 313만원 받고 기여금으로 311만원을 내서 연간 2만원의 이익을 얻어 가처분소득은 3,110만원이 됨
- 기본소득을 위한 기여금은 87조원이지만, 기여금과 기본소득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순기여금은 35조원임
 - ※ 순기여금 : 순부담자의 순부담액을 합친 값. 즉, 개인별로 내고 받는 것을 상계한 뒤 순부담액을 모두 합친 것
- 순수혜자 비율은 66.6%. 순수혜자 1명당 187만원 소요됨
- 지니계수는 0.5515→0.4963로 낮아지며, 지니계수 1% 낮추는데 6.3조원 소요됨

〈표 2〉 기본소득 보장의 효과

(단위: 백만원)

소득분위	시장소득	시장소득 2	보조금	기여금	순부담	가처분소득
0%	0	0	3.13	0.00	-3.13	3.13
14%	2.79	2.79	3.13	0.28	-2.85	5.64
15%	3.36	3.36	3.13	0.34	-2.79	6.15
50%	20.65	20.65	3.13	2.07	-1.06	21.71
66%	31.08	31.08	3.13	3.11	-0.02	31.10
67%	31.84	31.84	3.13	3.19	0.06	31.78
99%	154.04	154.04	3.13	15.40	12.28	141.76
100%	1,471.32	1,471.32	3.13	147.13	144.00	1,327.32
계	869조	869조	87조	87조	35조	869조
지니계수	0.5515	0.5515				0.4963
순수혜자	순수혜자 66.6% / 재분배 금액 35조원 / 지니계수 변화 0.0552					
경제적비용	35조원(내부 순부담 35조원 + 사중손실 0조원)					
효율성	순수혜자 1명당 187만원 / 지니계수 1%p 낮추는 비용 6.3조원					

○ 선별적 소득보장의 효과

- 〈표 3〉은 〈표 1〉과 같은 소득자 2,779만명으로 구성된 경제 모델에서 〈표 2〉의 기본소득과 동일한 금액인 313만원을 실업부조로 지급할 때의 효과임
- 표에서 〈시장소득 2〉는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시장소득의 변화임. 시장소득이 313만원 이하인 사람은 소득 활동을 중단함. 소득 활동 중단자들이 벌던 소득의 합계 즉 사중손실은 6조원임

- 14% 분위의 사람은 실업부조로 313만원 받고 기여금을 0원 내서 313만원의 이익을 얻고 가처분소득은 313만원이 됨
- 66% 분위의 사람은 실업부조로 0원을 받고 기여금으로 47만원을 내서 순부담이 47만원이 되어 가처분소득은 3,061만원임
- 전체적으로 급여와 기여는 동일하게 13조원임
- 실업부조 예산은 38조원, 여기에 사중손실 6조원을 더한 경제적 비용은 19조원
- 순수혜자 비율은 14.9%. 순수혜자 1명당 455만원 소요됨
- 지니계수는 0.5515→0.4963으로 낮아지며, 지니계수 1% 낮추는데 15.7조원 소요됨

〈표 3〉 선별적 소득보장의 효과

(단위: 백만원)

소득분위	시장소득	시장소득 2	보조금	기여금	순부담	가처분소득
0%	0	0	3.13	0.00	-3.13	3.13
14%	2.79	0	3.13	0.00	-3.13	3.13
15%	3.36	3.36	0	0.05	0.05	3.31
50%	20.65	20.65	0	0.31	0.31	20.34
66%	31.08	31.08	0	0.47	0.47	30.61
67%	31.84	31.84	0	0.48	0.48	31.36
99%	154.04	154.04	0	2.31	2.31	151.73
100%	1,471.32	1,471.32	0	22.02	22.02	1,449.30
계	869조	863조	13조	13조	13조	863조
지니계수	0.5515	0.5606				0.5395
순수혜자	순수혜자 14.9% / 재분배 금액 13조원 / 지니계수 변화 0.0120					
경제적비용	19조원(내부 순부담 13조원 + 사중손실 6조원)					
효율성	순수혜자 1명당 455만원 / 지니계수 1%p 낮추는 비용 15.7조원					

Ⅳ 기본소득 도입과 사회보장정책의 구상

-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한 가지 모형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우리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제적인 사회보장정책이 구상되어야 함
- 아래에서는 기본소득이 도입된다고 할 때,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과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으로 구분해서 소개하고자 함

■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 모형 : 1인당 월 10만원~30만원 정도의 낮은 기본소득 도입될 때
 - 1인당 지원금액이 기초생활보장제도 1인 생계급여 수준에 미달하는 금액임
- 사회서비스 : 현재 사회서비스를 유지 강화함
- 사회보험 : 사회보험의 유지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 사회수당
 - 아동수당은 기본소득으로 흡수함
 - 기초연금은 기본소득으로 흡수하되, 기본소득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유지해서 급여수준을 보장함
- 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는 기본소득으로 흡수하되, 기본소득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유지하여 급여수준을 보장함
 - 근로장려금 역시 기본소득으로 흡수하되 기본소득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유지하여 급여수준을 보장함
 - 보편적 실업 부조는 도입되지 않음
 - 장애인 수당, 농민 수당 등 기타 공공부조 유지 강화함
-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 사회보험은 현 수준을 유지 강화하고, 사회수당과 공공부조는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되 기본소득을 초과하는 액수를 지원함으로써 급여수준을 보장하는 방식임

■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

○ 모형 : 1인당 월 50만원 정도의 높은 수준 기본소득 도입될 때

- 기초생활보장제도 1인 생계급여 수준 이상의 급여를 기본소득으로 지급
- GDP 10%를 기본소득 기여금으로 낸다면, 10년 뒤 도달 가능한 모형임

○ 사회서비스 : 현재 사회서비스를 유지 강화함

○ 사회보험

- 국민연금 균등부분은 기본소득 금액만큼 감액, 절약된 예산으로 국민연금 소득비례부분을 증액하여 소득대체율을 향상시킴

▷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 연금액 = $(A + B) * c = A*c + B*c$

A : 전체가입자의 직전 3년간 월평균소득

B :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

c :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계수

- $A*c$ 부분(균등부분)을 기본소득 금액만큼 줄임. 이렇게 절약된 예산을 모아서 $B*c$ 부분(소득비례부분)을 늘림

- 이렇게 하면 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게 되어 소득대체율 향상됨

- 그 외 사회보험은 유지 및 강화함

○ 사회수당

- 아동수당은 기본소득으로 흡수함
- 기초연금은 기본소득으로 흡수함

○ 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는 기본소득으로 흡수
- 근로장려금은 기본소득으로 흡수
- 보편적 실업 부조는 도입되지 않음
- 장애인 수당, 농민 수당 등 기타 공공부조 유지 강화

- 사회서비스와 사회보험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국민연금의 A, B값 조정이 이뤄지고, 사회수당, 공공부조는 기본소득으로 전환되는 모형임

V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 가능성

■ 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할 때 실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경기도 차원에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공론조사를 실시된 바가 있음
 - 공론조사는 어떤 정책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숙의 토론(대상자와 전문가 사이의 토론 및 대상자 사이의 상호 토론)을 한 뒤 대상자들의 의견 변화를 조사하는 방법을 말함
 - 1차적으로 2019년 7월 2,549명 대상 면접 조사를 진행했음. 당시 면접조사 결과 기본소득 찬성 38%, 보통 25%, 반대 34%로 나타남
 - 위의 비율을 고려하여 동일한 비율로 도민참여단 165명 선정하여 1차 조사를 진행하였음. 기본소득과 관련된 자료 제공 후 2차 조사를 진행하였음
 - 도민참여단 165명과 1박 2일 숙의 토론 후 3차 조사를 진행하였음
- 숙의 토론 결과, 기본소득 찬성비율이 38%에서 72%로 높아졌음
 - 숙의 토론 후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찬성으로 변화하였음
 - 실제, 모든 소득에 10% 소득세를 내고 월 30만원을 받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72%가 찬성
 - 재원과 관련해 토지에 0.5% 토지보유세를 내고 1년에 60만원을 받는 토지배당에 대해서는 82%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남

Q.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도민참여단에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1차 조사 당시 46% 수준이던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차 조사에서 61%로 상승한데 이어 3차 최종 조사에서 76%까지 높아졌다.



Q.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나요?

도민참여단은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1차 39%, 2차 57%의 찬성률을 보인 데 이어 3차에서는 75%가 찬성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집계됐다.



Q. 기본소득의 재원이 무엇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공론조사 결과는 기본소득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올바른 정보에 기초한 열린 토론임

참고문헌

강남훈(2019). 『기본소득의 경제학』. 박종철 출판사.

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2018). 『기본소득이 온다』. 사회평론아카데미.

한국일보(2020. 6. 18.). “기본소득 도입해야 할까”(강남훈·양재진 대담).

동아일보(2020. 6. 7.). “전 국민 고용보험,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정의로워”.

프레시안(2020. 8. 3.). “가짜 기본소득 담론은 모두 배척해야 한다”(이상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s://basicincomekorea.org/>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 FOCUS 기본소득 특별호3 2020-(특)-03
기본소득과 복지정책의 관계

발행일 2020년 8월

발행인 진석범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